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17 발의연월일: 2021. 1. 25.

발 의 자:김민석·강병원·강준현

고영인 • 권인숙 • 권칠승

강득구 · 민병덕 · 서동용

양기대 · 양정숙 · 윤후덕

이광재 • 이수진 • 이용빈

장경태 · 장철민 · 조승래

조정후 · 최혜영 · 한병도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. 또한 코로나19의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일자리의 양과 질,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.

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 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 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이 필요하며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 ·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.

그러나 현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,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· 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 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법의 목적·대상·사업 등 확대에 맞춰 법률 명칭을 「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」에서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변경하고,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).
- 나.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'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'에서 '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(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·직무기초능력 포함) 습득·향상훈련'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직업·진로상담, 경력개발 지원을 포함함(안 제2조).
- 다.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

한 정보 등으로 확대함(안 제6조제1항).

라.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확대하고,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직업·진로상담, 경력개발 등 추가 지원함(안 제2장, 제18조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근로자직업능력"을 "국민 평생 직업능력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근로자의 생애에 걸친"을 "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"으로, "필요한 기술·기능 인력"을 "필요한 인력"으로, "근로자의 고용촉진 ·고용안정"을 "국민의 고용창출, 고용촉진, 고용안정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근로자에게"를 "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"로, "직무수행능력을"을 "직무수행능력(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·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·매체"를 "직업·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·매체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근로자 개인"을 "국민 개개인"으로, "근로자의"를 "국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"를 "직업능력개발훈련은"으로, "근로자에게"를 "국민에게"로, "하여야"를 "노력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근로자"를 "국민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 보화 및 포괄적 직업·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 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.

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직업 소개,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"근로자의"를 "국민의"로, "근로자가"를 "국민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근로자는"을 "국민은"으로, "직업능력개발을"을 "평생 직업능력개발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근로자가"를 "국민이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"을 "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직업능력개발"을 "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근로자가"를 "국민이"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근로자의 고용촉진 및"을 "국민의 고용창출, 고용촉진 및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직업능력개발에"를 "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"로, "근로자의"를 "국민의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"직업능력개발"을 "평생 직업능력개발"로 하고, 같은 조 중 "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"을 "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"근로자"를 "국민"으로, "제외한다)가"를 "제외한다)이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근로자"를 "국민"으로 한다.

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근로자"를 "국민"으로 한다.

제11조의4 중 "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"를 "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"로, "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"을 "직업능력개발에 관한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근로자"를 "국민"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"을 "직업능력개발훈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실업자등"이라 한다)의 고용촉진"을 "국민의 고용창출, 고용촉진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·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근로자(실업자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"를 "근로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"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"를 "국민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중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"를 "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·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중 "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"을 "따라 훈련비용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근로자의 생</u> 제1조(목적) ---- 국민 모두가 평 <u>애에 걸친</u>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생에 걸친 -----•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 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하 인력 -----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---- 국민의 고용창출, 고용촉 ·고용안정 및 사회·경제적 지│ 진. 고용안정 -----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 현 및 사회・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직업능력개발훈련"이란 근 1. ----- 모든 국민 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에게 평생에 걸쳐 ---- 직무 <u>수행능력을</u> 습득·향상시키기 수행능력(지능정보화 및 포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 적 직업 · 직무기초능력을 포 다. 함한다)을 -----2. "직업능력개발사업"이란 직 2. -----업능력개발훈련, 직업능력개 직업 • 진로 발훈련 과정 • 매체의 개발 및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, 직업

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·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 다.

3. ~ 5. (생략)

- 제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7 원칙)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·적성·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 - ② (생략)
 - ③ <u>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</u> 의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고 용형태,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 는 아니 되며, 모든 <u>근로자에게</u>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<u>하여</u> 야 한다.
 - ④·⑤ (생 략)
 -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<u>근로자</u>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·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.

<신 설>

<u>능력개발훈련 과정·매체</u>
.
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
원칙) <u>①</u>
국민 개개인
<u>국민의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
국민에게
노력
하여야 한다.
c ·· 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국민</u>
৩ <u>ㅋ</u>
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되어지 기무느러뿐만 하나가 기
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
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

<신 설>

제4조(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) 제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근로</u>
<u>자의</u>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
을 위하여 사업주·사업주단체
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
능력개발사업과 <u>근로자가</u> 자율
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
훈련 등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하
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
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
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
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(생 략)

③ <u>근로자는</u>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<u>직업능력개발을</u>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

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
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
하여야 한다.
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「고용
정책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직
업소개,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
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
록 하여야 한다.
]4조(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)
① 국민의
국민이
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민은
평생 직업능력개발을

하여야 한디	ŀ.
--------	----

- ④ (생략)
-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・취업지도,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(이하 "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"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・시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<u>직업능력개발</u>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
 - 2. · 3. (생략)
 - 4.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

 ④ (현행과 같음) ⑤
<u>국민이</u>
1. <u>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</u> 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민이</u>

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 원에 관한 사항

5. ~ 10. (생략)

- 11. 그 밖에 <u>근로자의 고용촉진</u>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④ (생 략)
- 제6조(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<u>직업</u> 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·제공, <u>근로자의</u> 직업능력 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 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・③ (생 략)
- 제7조(<u>직업능력개발</u>에 관한 조사 •연구) 고용노동부장관은 <u>근로</u> <u>자의 직업능력개발</u>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 사•연구•개발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재해 위로금)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

5. ~ 10. (현행과 같음)
11 국민의 고용창출, 고
용촉진 및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
축) ① 국민의 평생 직
업능력개발에
 국민의

 ② ② (ᅯ레기 기호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<u>평생 직업능력개발</u> 에 관한
조사·연구) <u>국민</u>
의 평생 직업능력개발
.
제11조(재해 위로금) ①

현을 받는 <u>근로자</u>(「산업재해보 상보험법」을 적용받는 사람은 <u>제외한다)가</u>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받는 <u>근로자</u>에 대 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 금을 부담하되,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의2(공공단체의 직업능력 저개발사업) 공공단체는 <u>근로자</u>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제11조의4(국제협력 증진) 고용노 저 동부장관은 <u>근로자의 직업능력</u> 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· 기술 훈련, <u>근로자의 직업능력</u>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

<u>국민</u>
제외한다)이
국민
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공공단체의 직업능력
개발사업) <u>국민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4(국제협력 증진)
평생에 걸친 직업능
력개발에 관하여
직업능력개발에 관한

참가 등 국제기구 · 외국정부 또 는 외국기관과의 교류 · 협력사 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

- 제12조(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 하 "실업자등"이라 한다)의 고 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 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실업자
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 른 수급권자,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. ~ 5. (생략)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| <삭 제> 는 사람
- 개발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 | 개발 지원) ① -----은 근로자(실업자등은 제외한 |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자

<u>-</u>	
제2장 <u>국민</u> 의 자율적인	
직업능력개발 지원 등	
제12조(<u>직업능력개발훈련</u>	지원
등) ①	
<u></u>	'민의
고용창출, 고용촉진	
<u><</u> 삭 제>	
<u><삭 제></u>	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제17조(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----- 근로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

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8조(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 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(이하 "직업능력개발계좌"라 한 다)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 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실업자등
- 2. 전직·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
조에서 같다)의
1. ~ 3. (생 략)
제18조(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
및 운영) ①
국민의
<u>.</u>
<u><삭 제></u>
<u><삭 제></u>
② <u>제1항에 따</u>
른 직업능력개발계좌
<u>.</u>

1. ~ 2.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 략)

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· 저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(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은 국민에게 직업·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
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
정취소 등) ①
따라 훈련비용을 -